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가소328669 손해배상(기)

원 고 장경옥

피 고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8.부터 2012. 7. 19.까지는 연 5%, 2012. 7.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국가보안법위반의 피의사실로 2006. 10. 24. 체포되어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그 무렵 변호사인 원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8. ○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문 실시 전 국가정보원 조사실에 도착하였는바, 국가정보원 수사관 2명은 대검찰청 예규 형식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근거로 원고에게 피의자의 뒤편 대각선 1.5미터 정도에 위치한 좌석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피의자의 바로 옆자리에 앉던가 아니면 서있겠다고 하였고, 이에 수사관과 사이에 좌석 위치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 결국 피의자의 바로 옆에서 약간 뒤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앉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필기구와 종이 등을 꺼내며 피의자신문의 내용을 메모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수사관은 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여 신문

내용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원고와 수사관 사이에 신문내용을 메모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수사관은 원고가 신문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용인하고 원고는 이후 신문 참여에 관하여 수사관들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신문이 시작되었는데, 이전 여러 차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대부분 진술거부로 일관하던 피의자가 수사관으로부터 2005. 8.경 중국 방문 경위 및 2005. 9. 2. 입국 직후 워커히호텔 카지노를 이용한 사실에 관하여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변명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수사관에게 '카지노 출입은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카지노 이용사실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자 원고는 피의자에게 "향후 일체의 진술에 대해서 거부하시라고 조언을 드릴게요"고 말하였다.

마. 이에 수사관들이 원고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거부 권유가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양심을 가지고 실제적 진실을 다투자고 말하면서 강하게 항의하여, 위 권유는 적법한 것이라는 원고와 사이에 다시 언쟁이 벌어졌고, 수사관은 원고에게 즉시 퇴거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불응하자 1명의 수사관이 더 들어와 3명의 수사관 중 2명이 원고의 팔과 어깨를 양쪽에서 잡고 원고를 수사실에서 강제로 끌어내었다.

2.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퇴거처분의 적법 여부

가. 2006. 11. 8.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에 구금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지는 아니하지만¹⁾,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의 변호인과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2007. 6. 1. 신설되었다.

의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9조, 제34조 등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력을 먼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7. 11. 30.자 2007모26 결정), 다만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자 2003모402 결정 등 참조).

나. 따라서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은 검찰총장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기하여 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효력이 없으며,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의 피의자신문에도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이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원고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수사관의 신문에 대하여 1회 이의를 제기한 뒤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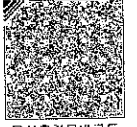
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피의자에게 그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인한 행위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있던 원고에 대하여 그 신체를 잡아 꼼짝 못하게 한 뒤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의 행위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으로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범위

따라서 피고는 공무원인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분명하므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이 사건의 경위, 그 후의 결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6. 11.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정

조수정



정본입니다.

2012.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김명옥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